

제 26 25차 서비스 근로자 국제 노동조합 국제 대회 의사 규정
2016년 5월 22-24 29—30일

규정 1. 대회 프로그램은 진행의 순서이다. 그러나 진행임원이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또는 초빙연사를 등장시키는 경우 등 필요시에 변경 할 수 있다.

규정 2. 대회장 건물의 입장과 식별 및 좌석 배정을 위하여 대의원 또는 교체 참석자들은 등록시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발급한 배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규정 3. 자격심사 위원회는 대회 개최 직후에 현재 자격을 갖추고 참석한 대의원들과 교체 참석자들의 인원수와 함께 유자격 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이전 보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매일 개최중인 대회일과의 개최순서 후에 추가 보고를 하여야한다.

규정 4. 대회에 관한 발표는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자가 서명하여야 하고 국제 서기-재무국에 송부하여야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되어져야 하는 대회의 보고서나 다른 통보나 다른 집행문서는 인쇄된 종이나 전자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규정 5. 대회는 늦어도 ~~2012년 5월 30일~~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규정 6. 모든 경우의 본 대회 의사 진행은 신판 (11차 보정) 로버트 의사규정들에 수록된 규정들에 따르며 현장과 내규와 본 의사규정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며 서로 상치되지 않는다. 각국어 번역본에 의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의안 내용과 현장 수정에 있어서 영어가 지정표준 언어가 된다.

규정 7. 모든 대의원들과 초빙 대의원들에게는 예약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지방 노조 대표단은 지정 예약석에 배정된다. 인정된 대의원들과 교체 대의원들에게는 별도로 지정된 추가 구역이 배당된다. 사회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된 초청내빈, 교체 대의원, 청년 대의원들과 임직원들에게는 대회장 마루에 좌석이 배당된다.

규정 8. 대회의 공식적인 싸인이나 배너들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시할 수 없으나 다만 국제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지명하고 선거하는 동안에만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배너와 싸인들을 복도와 벽을 제외하고 대의원들과 교체 대의원들의 좌석지역에 전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iPad나 대회전화 앱등의 노조가 제공하는 자료 노조내부의 선거캠페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규정 9. 대의원들, 교체 대의원들이나 인정된 청빙 내빈들은 지정된 장소에서선전물을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회장 밖에 출입문들로서 각

개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으며 대회장소의 사용규정과 무례함과 무질서가 없도록 한다.

규정 10. 국제 위원회 임원 혹은 집행부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자료들을 포함한 모든 배포자료들은 배포를 원하는 오전이나 오후 순서 시작 한 시간 전에 경호위원회에 제출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이들 자료는 대회와 관련이 있거나 별도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규정 11. 별도로 명시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한 음성 전자 확장 및 휴대폰 대화를 금한다. 신호음이 들리지 않는 한 문자교신은 허락된다. 허락없이 대회 기록내용들의 비디오 녹화, 녹음, 전송은 금지한다.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격부여

규정 12. 유자격 대표가 없는 수탁된 로컬 노조들은 로컬 노조의 신탁인에 의하여 로컬 노조의 회원 중에서 임명된 “초빙 대의원” 를 세울 수가 있다. 초빙 대의원들의 인원수는 대회에서 인정되었을 인원수로 제한된다. 초빙대의원들은 대회장 일반 의석에 앉으며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지만 동의나 투표를 하지 못한다.

규정 13. 유자격 대의원이 없는 신규 인가된 로컬 노조들은 해당 노조 위원장이 지방노조 회원 중에서 임명하는 초빙대의원을 보유할 수 있다. 초빙대의원의 인원수는 대회에서 가질 수있었던 인원수로 제한한다. 초빙대의원들은 대회장 일반 의석에 앉으며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지만 동의나 투표를 하지 못한다.

규정 14. 국제집행위원회 회원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대의원이 되지 못하였을 회원들은 초빙대의원이 된다. 초빙대의원들은 대회장 일반 의석에 앉으며 현안에 대한 토의를 하지만 동의나 투표를 하지 못한다. 초빙대의원들은 국제노조 부서나 회계감사국의 후보추천이나 동 추천에 동의와 재청을 할 수 있다.

규정 15. 대회 출석을 중단하는 대의원들은 자격심사위원회에 자신들이 떠난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자격심사위원회에 등록된 대의원이 영구 이탈을 하거나 참석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의 소속 로컬 노조에서 지정된 교체 대의원이 그 대의원직을 승계한다.

결의와 개정

규정 16. 정관과 법제위원회는 정관 위원회라고도 알려진 법제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관한 개정 사항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결의와 다른 안건을 다루도록 다른 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규정 17. 정관과 규정에 관한 결의사항이나 개정사항들을 합당하게 제출한 로컬 노조의대의원 한명에게 해당되는 위원회를 위한 담화를 5분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위원회는 다른 대의원들로부터 논평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각 발언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3 분으로 제한한다. 해당 위원회가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자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위원회 회의는 다른 대회등록 참석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로 진행한다. 위원회들은 대의원들이 위원회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청문 일정계획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규정 18.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추천된 사항들을 실행에 옮기는데 적합한 결의사항과 개정사항들을 대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때에 위원회에 해당되는 합당한 조치와 모든 결의사항과 개정사항들을 전체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1) 동일한 제목에 대하여 다수의 결의사항들과 개정사항들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하거나, (2) 동일한 제목에 관한 다수의 결의사항과 개정사항들의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결의사항으로 묶어서 묶여진 결의사항을 원본으로 삼고 그 이전의 본래의 결의사항들과 개정사항들을 함께 제출하거나, (3) 제안된 결의사항이나 개정사항들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소수의견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더라도 대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하여 본 규정을 유예시키고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일정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대회의 만장일치로 대의원은 결의사항을 대회의 회의실에서 동의 원안 형태로서 제출하여 국제 서기-재무 담당에게 전달되어 합당한 위원회에 참고 시킬 수 있다. 이런 결의사항은 서면으로서 입안자와 재청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이들은 대회의 투표권자라야 한다.

규정 19. 어떤 결의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고려를 하기 이전에 국제 위원장은 “탁상의논” 기간을 갖고 결의사항에 관련된 제목들을 공식적인 의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관련 대의원들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규정 20. 위원회들은 다수의 결의사항들을 하나의 동의안으로서 일괄사항으로 고려하여 표결하여 줄 것을 보고할 수 있다. 대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일괄사항들 중에서 여하한 결의사항이라도 분리하여 심의하고 투표할 수 있다.

규정 21. 법제위원회 정관과 법제위원회의 어떠한 보고도 개정하는 동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표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가 제출한바 대로 표결에서 부결되는 경우 해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대회의 의도에 합당하게 개정되어 다시 제출되고 대의원들의 표결에 회부되어야 한다. 법제위원회 정관과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동일 사항에 관한 해당 위원회로 부터의 여하한 추가적인 보고도 회의석으로 부터 개정될 수 있다. 법제위원회 정관과 법제위원회로 부터의 최종적인 보고 이후에는 대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규정을 유예하고 해당 위원회가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더라도 위원회로 하여금 결의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토론

규정 22. 모든 대의원들과 초빙대의원들은 회의석에서 대회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자의 확인이 있고 본인이 성명과 지방번호를 밝힌 후에 주어진 마이크로 폰을 사용하여 발언할 수 있다. 어떤 대의원도계류중인 동의안에

개정을 말할 때 몇개의 단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회자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규정 23. 어떤 대의원도 같은 날 동일 질문에 대하여 토론중에 두번 이상 발언하거나 각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토론 없이 3분의 2표결로 전체 회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은 여타 대의원이 발언을 원할 경우, 어떤 대의원도 같은 날 동일한 발의안에 대해서 두번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없다.

규정 24. 위원회의 보고 회원은 토론 종료 이후에도 답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규정 25. 토론시 발언하는 어떤 대의원도 선결 문제의 채택여부 동의를 할 수 없다.

규정 26. 주요 발의안 및 미결 2차 발의안의 - 수정안 포함 - 총 시간은 전체회의 과반수 표결로 연장되지 않는 한 총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 27. 진행임원 또는 열 (10)명의 대의원의 동의를 받은 대의원은 투표의 분할을 (세지 않은 기립투표) 요구할 수 있다. 진행임원 또는 200명 대의원의 동의를 받은 대의원은 진행요원에 의한 기립투표의 집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진행임원 또는 400명 대의원의 동의를 받은 대의원은 투표의 롤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국제 재무국장 또는 피지명자는 로컬 노조를 숫자 순으로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로컬 1부터 시작) 롤콜 한다. 각 로컬 노조가 호명되면, 해당 대의원단의 보고 회원은 대의원의 표결을 발표한다. 보고 회원은 또한 로컬 노조 대의원의 투표내용을 서면 공개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로컬 노조의 표결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투표용지를 롤콜 위원회 대표에게 전달한다. 대의원단의 대의원의 이견이 있을 시 로컬 노조의 각 대의원의 투표가 진행된다. 대의원 투표 요구는 표결이 보고되고 다음 로컬 노조가 롤콜에 응하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투표를 원치 않는 대의원은 기권할 수 있다. 로컬 노조가 호명되었을 때 아직 표결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순서에서 “통과”되며 첫번째 롤콜 이후에 숫자순으로, 또한 알파벳 순으로 한번 다시 호명될 수 있다. 롤콜중에 이전의 투표가 표결 결과를 확실하게 된 경우, 진행임원은 자신의 재량으로 롤콜을 일시 중지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직 표결을 발표하지 않은 모든 노조는 해당 대의원회에 출석한 각 대의원의 투표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기재, 서명하여 롤콜 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

(b) 시간 절약을 위해, 진행임원은 진행임원이 지정한 특정 시간대 중에 롤콜 위원회가 진행한 공개 서면 투표에 의한 롤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각 로컬 노조의 대의원장은 해당 대의원단에 출석한 각 대의원의 투표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기재 및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장은 개표를 위해서 이 투표용지를 지정된 롤콜 구역으로 가져간다. 지정된 선거 기간중 제출된 투표용지만이 개표될 것이나, 지정 기간이 종료될 때 대기중인 대의원장은 해당

대의원 투표를 개표할 수 있다. 대의원단의 회원은 표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장과 동행할 수 있다. 본 대회의 활동이 방해 없이 진행되는 동안, 본 대회는 미결의 룰콜 표결 결과가 기록을 위해 발표되기 전까지는 폐회될 수 없다.

(c) 대표단이 호명되었을 때 회의장에 출석한 유자격 대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 로컬 노조 대의원단의 표의 강도는 정관 및 규정 제 4조 12항에 의거하여 산출되며, 대의원표가 필요한 경우 소숫점까지 동일하게 나뉜다.

(d) 일단 표결을 마치면, 진행임원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다. 룰콜 위원회는 직원의 지원을 받아, 개표 작업을 하여 본 대회에 이를 보고한다. 각 로컬 노조의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나타내는 위원회의 집계표와 기권자수의 기록은 본 대회의 기록의 일부로 포함되어 가능한 신속히 게시된다.

선거

규정 28. 임원 지명 및 선거는 본 대회 여러 회의 중에 진행될 수 있고 룰콜 위원회의 감독하에 치루어 질 수 있다.

규정 29. 특정 임원의 지명은 진행 임원에 의해 공개적으로 선포될 수 있다. 지명은 다음 순으로 진행된다: 국제위원회 회장, 국제 서기-재무국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이사회 의원, 은퇴 이사회 의원, 여타 국제위원회 임원, 및 감사국 순이다. 경합하는 임원의 룰콜 투표는 모든 임원의 지명이 완결되기 전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한개 이상 직의 지명이 동시에 일정이 잡히는 경우 해당인은 한개 직에 대한 지명만을 받게 된다.

규정 30. 임원 지명은 이전 임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락될 수 없다. 모든 지명은 마이크를 통해 발표되어야 하며 최소한 한명, 그러나 두명을 넘지 않는 대의원의 재청이 있어야 한다. 대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수 만큼의 여러 후보자를 지명 또는 재청할 수 있다. 부회장, 국제집행위 멤버 (은퇴자 포함) 및 감사국 직의 경우, 대의원은 후보자들을 슬레이트로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슬레이트는 투표용지에 번호로 표기된다. 슬레이트에 열거된 모든 후보자들은 또한 투표용지에 개별적으로 거명된다.

규정 31. 국제위원회 회장 및 국제 서기-재무국장의 지명 연설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청 연설은 (각 후보당 2개 연설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의 지명연설은 2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청 연설은 (후보자 당 또는 해당하는 경우 슬레이트 당 한 명 이상 불허)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 및 감사국 멤버의 지명연설은 1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청 연설은 불허한다.

규정 32. 후보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 지명 시에 마이크를 통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록을 위해 이의 제기의 사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는 본 대회에서 즉시 해결되어야 하며, 또는 진행임원의 재량으로 룰콜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회부된 경우 이의를 제기한 회원과 해당 후보자는 즉시 룰콜

위원회와 회의를 갖는다. 룰콜 위원회의 결정은 본 대회에 보고되어 표결된다. 지명 종결 이후에 부적격으로 판명된 후보의 경우, 해당 직을 위한 지명이 다시 시작된다.

규정 33. 선거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선거 당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록을 위해 이의 제기의 사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는 본 대회에서 즉시 해결되어야 하며, 또는 진행임원의 재량으로 룰콜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회부된 경우, 이의를 제기한 회원은 즉시 룰콜 위원회와 회의를 가지며, 본 위원회가 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룰콜 위원회의 결정은 본 대회에 보고되어 표결된다.

규정 34. 대의원 자격, 후보 적격 여부 또는 선거 진행방식 이외의 여타 사항에 대한 선거 이의 제기를 원하는 회원은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를 접수한다.

규정 35. 피선거직 지명 종료 전에 진행 임원은 지명을 사임하기 원하는 피지명인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확인한다. 특정 직에 대한 지명이 종료되고 단 한명의 피지명인 또는 필요수의 지명인만이 지명된 경우, 이같은 지명인은 선포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공표되며, 이같은 공표는 해당 직의 지명이 종료되자마자 또한 다음 직의 지명시작 이전에 발표된다.

규정 36. 해당 일의 모든 직의 지명이 완료된 후, 각 선출직 별 피지명인은 각각 경합을 위해 준비한다. 풀타임 임원직을 제외한 각 직의 피지명인에게 번호가 부여된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및 부여된 번호, 혹은 해당하는 경우, 슬레이트 번호가 로컬 노조 대의원에게 제공된다.

규정 37. 룰콜 시작 이전에, 피지명인 또는 잠정 피지명인은 참관인으로 복무할 대의원 명단을 룰콜 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관인은 룰콜 시작 전에 룰콜 위원회 의장앞에 출석하는 한 룰콜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가 집계되는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규정 38. 후보자는 언제든지 선거에서 기권할 수 있다.

규정 39. 룰콜에 의한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회의에 참석한 유자격 대의원만이 대의원단이 호명되었을 때 투표할 수 있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 로컬 노조 대의원단의 표의 강도는 정관 및 규정 제 4조 12항에 의거하여 산출되며, 필요한 경우 로컬 노조의 출석 및 투표한 대의원표가 필요한 경우 소숫점까지 동일하게 나뉜다.

(b) 국제 서기-재무국장 또는 지명인은 로컬 노조를 숫자 순으로 또한 알파벳 순으로 (로컬 1부터 시작) 룰콜하며 로컬 노조의 일인당 표수를 명시하며 대의원

투표 방식을 질문한다. 각 로컬 노조가 호명되면 해당 대의원단의 보고 회원은 각 후보에 부여된 숫자에 대한 대의원의 투표수를 발표하고, 폴타임 직에 대한 발표는 이름을 거명하며 투표수를 발표한다. 대의원단의 보고 회원은 또한 로컬 노조 대의원의 투표 방식에 대하여 서면 공개 투표용지에 표시하며, 해당 로컬 노조 표결이 발표되기 전에 롤콜 위원회 대표에게 표기된 투표용지를 전달한다. 해당 대의원단내 의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로컬 노조 소속 각 대의원 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대의원단 투표는 투표결과가 발표되고 또한 다른 로컬 노조가 롤콜 호명에 응답하기 전에 요구되어야 한다. 투표를 원치 않는 대의원은 기권할 수 있다. 노컬 노조가 호명되었을 때 아직 표결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순서에서 “통과”되며 첫번째 롤콜 이후에 숫자순으로, 또한 알파벳 순으로 한번 다시 호명될 수 있다. 특정 로컬 노조 표결이 발표될 때 롤콜 위원회는 직원의 도움으로 각 로컬 노조의 표결을 기록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각 로컬의 실지 투표수는 (예컨대, 대의원 투표 곱하기 대의원 당 균등분할 투표) 롤콜 위원회가 직원의 도움으로 산출한다.

(c) 시간 절약을 위해, 진행임원은 진행임원이 지정한 특정 시간대 중에 롤콜 위원회가 진행한 공개 서면 투표에 의한 롤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각 로컬 노조의 대의원장은 해당 대의원단에 출석한 각 대의원의 투표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기재 및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장은 개표를 위해서 이 투표용지를 지정된 롤콜 구역으로 가져간다. 지정된 선거 기간중 제출된 투표용지만이 개표될 것이나, 지정 기간이 종료될 때 대기중인 대의원장은 해당 대의원 투표를 개표할 수 있다. 대의원단의 회원은 표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장과 동행할 수 있다. 본 대회 활동이 방해 없이 진행되는 동안, 본 대회는 미결의 롤콜 표결 결과가 기록을 위해 발표되기 전까지는 폐회될 수 없다.

(d) 일단 표결을 마치면, 진행임원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다. 롤콜 위원회는 직원의 지원을 받아, 개표 작업을 하여 본 대회에 이를 보고한다. 각 로컬 노조의 개표결과를 나타내는 위원회의 집계표와 기권자수의 기록은 본 대회의 기록의 일부로 포함되어 가능한 신속히 게시된다.

규정 40.의사진행 녹취록과 모든 대의원의 자격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선거 기록은 최소 1년간 국제 재무국에 보관된다.

항소

규정 41.항소 위원회는 합당하게 빠른 시기에 회의를 갖고 주장을 청취한다. 항소위원회는 이전 청문기관 또는 국제집행위원회 임원에게 이미 제시되지 않은 증거를 고려하거나 청취하지 않는다.

규정 42.항소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 집행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규정을 수립할 권한이 있으며 각 항소 당사자의 청문회에 대한 한정 기간을 부여한다.

규정 43.청문회 이후에, 항소 위원회는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과 함께 이를 본 대회에 제출한다.

규정 44.각 항소에 대한 질문은 “국제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이며, 이는 본 회의에서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된다.